

담보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부동산 담보 취득 요건을 일반 금융기관 등과 동일하게 조정

2. 주요 제·개정 내용

부동산 담보 취득 시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을 거래금액의 13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조정*함 (안 제11조제4항)

* 일반 금융기관 담보설정비율(120%)과 동일하게 조정

- 담보 부동산(건물)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금액을 거래금액의 130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조정함 (안 제22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7층 금융기획실
- 담당자(이메일) : jtv1116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714
- 팩스번호 : 051-955-5705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(기간 20일 미달 시)

고객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의 개정으로 신속한 시행을 위해 단축

[별첨]

담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현행	개정안
제11조(담보의 취득) ① ~ ③ (생략) ④ 근저당권의 설정최고액은 <u>거래한도액의 130퍼센트로</u> 한다.	제11조(담보의 취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거래금액</u>의 <u>120퍼센트로</u> -----.
제22조(화재보험의 부보) ① (생략) ② 담보물건의 부보금액은 건물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의 <u>130퍼센트로</u> 하며, 보험기간은 거래기간 이상이어야 한다. ③ (생략)	제22조(화재보험의 부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120퍼센트로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